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sm202512-02
평가금액	129,740,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시민감정평가사사무소 / 조원제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6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시민감정평가사사무소 / 조원제	eyJhbGciOiJFUzI1Nils	2025-12-12 10:34: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공매
(울산세무서 2025-12490-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sm202512-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민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조 원 제

조원제



감정평가액	일억이천구백칠십사만원정 (₩129,740,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지방세)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가우철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2025-12490-A01		2025.12.05	2025.12.05	2025.12.1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4,990	토지	4,990	26,000	129,74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29,74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울리 소재 “문수산쉼터”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임야)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구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개요(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2025.01.01. 개별지가 (원/㎡)	기타
1	청량읍 울리 산335-5	임야	4,990.0	개발제한 자연녹지	3,160	--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12.05.일임.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5.12.05.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5.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방식

- ▶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임.
-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며 공시지가기준법 역시 비교방식에 포함됨.
- ▶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임.

3) 토지의 감정평가

가. 적용규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나. 공시지가기준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임.

다.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라. 시산가액 조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동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시산가액을 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사항

1)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제반 공부자료 및 현장실사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2) 본건의 정확한 토지 현황 및 지적 경계의 확인은 측량을 요하며, 본건 토지상의 수목은 통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이를 토지의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토지의 동측 일부로 도로(콘크리트 포장 임도)가 지나고 있으며, 본건 평가는 이를 감안하여 적의 평가하였음.

4) 본건 토지의 경우 2024.01.18.일자로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사업시행지 : 울주군 청량읍 울리 산335-5번지
- 사업의 종류 : 개간(농지확대 개발사업)
- 명칭 : 청량읍 울리 산335-5번지 개간사업
- 면적 : 4,990㎡
- 규모 : 감나무 과수원 조성
-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4개월 간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상기 개간사업의 연장신청이 최근에 접수되어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며, 세부내역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건 평가는 이러한 개간사업의 승인내역 등을 적의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5) 본건 평가에 사용된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의 세부적인 지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으로 처리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출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2)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하기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나. 비교표준지공시지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청량읍 울리 산79-3	임야	16,912.0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소로 한면	사다리 급경사	4,98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녹지지역]

기 간	지 가 변 동 률 (%)	비 고
25.01.01 ~ 25.12.05	(0.810%) 1.00810	2025.01.01 ~ 2025.10.31 : 0.752 2025.10.01 ~ 2025.10.31 : 0.051 $(1+0.00752) \times (1+0.00051 \times 35/31)$ ≒ 1.00810

- ▶ 2025년 11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로 2025년 10월분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동일수급권내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요인 대등(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구 분	항 목	세 부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나.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번호	비교 표준지	비 교 항 목				격차율
		접근	자연	행정	기타	
1	A	0.70	0.80	1.00	1.05	0.588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도로의 폭, 계통, 연속성 및 인근지역,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등 제반 접근조건에서 열세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표고, 경사 등 제반 자연조건에서 다소 열세 - 본건은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으로 비교표준지 대비 기타조건에서 다소 열세하나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하여서 장래의 동향 등 전체적인 기타조건에서 다소 우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 [2003다 38207(2004.05.14. 선고), 2002두5054(2003.07.25. 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선례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기로 함.

나. 비교 거래사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처 :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매매금액 (원)	거래시점	비고
가	청량읍 울리 산***-**	임	4,933 중 1,045.0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25,280,000	2024.02.14	-

▶ 상기 거래사례는 전체면적 중 일부 지분의 매매사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평가전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처 : KAPA HUB]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비고
a	청량읍 울리 산***	임	1,131.0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46,000	2025.04.28	담보	선정
b	청량읍 울리 산**	임	144,694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5,500	2023.04.21	담보	-
c	청량읍 울리 산***	임	48.0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54,000	2025.04.28	경매	-
d	청량읍 울리 산****	임	9,917.0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44,500	2024.02.15	쟁송	-

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위치	구분	가 격 수 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울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본건과 유사한 임야	본건과 유사한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림의 지가수준은 약 @20,000원/㎡~@30,000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위치, 접면, 경사, 도로의 상태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마. 평가대상 지역의 경매통계 분석

[출처: 법원경매정보 매각통계 참조]

구분	소재지	기간	매각율(%)	매각가율
임야	울산광역시 울주군	최근 1년	15.5	39.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 산정산식

$$\begin{array}{l} \text{그 밖의} \\ \text{요인 보정치} \end{array} = \frac{\text{평가전례(거래사례)토지단가X시점수정X지역요인X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 평가전례 a / 비교표준지 A

구 분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전례a	46,000	1.00488	1.00	0.950	43,913	8.747
표준지A	4,980	1.00810	1.00	1.000	5,020	
시점수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녹지지역(25.04.28 ~ 25.12.05) - 2025.04.01 ~ 2025.04.30 : 0.094 - 2025.05.01 ~ 2025.05.31 : 0.073 - 2025.06.01 ~ 2025.06.30 : 0.077 - 2025.07.01 ~ 2025.07.31 : 0.079 - 2025.08.01 ~ 2025.08.31 : 0.082 - 2025.09.01 ~ 2025.09.30 : 0.058 - 2025.10.01 ~ 2025.10.31 : 0.051 $(1+0.00094*3/30)*(1+0.00073)*(1+0.00077)*(1+0.00079)*(1+0.00082)*(1+0.00058)*$ $*(1+0.00051)*(1+0.00051*35/31) \approx 1.00488$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요인 대등					
개별요인	접 근	자 연	행 정	기 타	계	
	1.00	1.00	1.00	0.95	0.950	
	- 비교표준지는 평가전례 대비 광평수로서 기타조건에서 다소 열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전례,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하기와 같이 결정함.

- 비교표준지 A : 8.74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구 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4,980	1.00810	1.00	0.588	8.74	25,800	26,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출

가) 평가개요

본건 토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을,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 선정사유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하기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비교 거래사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처 :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매매금액 (원)	거래시점
가	청량읍 울리 산***-**	임	4,933 중 1,045.0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25,280,000 (@24,191원/㎡)	2024.02.14

▶ 상기 거래사례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이며, 지분의 거래사례임.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 거래사례의 경우 인근 유사부동산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시점수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녹지지역]

기 간	지 가 변 동 률 (%)	비 고
24.02.14 ~ 25.12.05	(1.533%) 1.01533	2024.02.01 ~ 2024.02.29 : 0.047 2024.03.01 ~ 2024.03.31 : 0.063 2024.04.01 ~ 2024.04.30 : 0.068 2024.05.01 ~ 2024.05.31 : 0.072 2024.06.01 ~ 2024.06.30 : 0.088 2024.07.01 ~ 2024.07.31 : 0.102 2024.08.01 ~ 2024.08.31 : 0.093 2024.09.01 ~ 2024.09.30 : 0.061 2024.10.01 ~ 2024.10.31 : 0.049 2024.11.01 ~ 2024.11.30 : 0.041 2024.12.01 ~ 2024.12.31 : 0.052 2025.01.01 ~ 2025.10.31 : 0.752 2025.10.01 ~ 2025.10.31 : 0.051 $(1+0.00047*16/29)*(1+0.00063)*(1+0.00068)*$ $(1+0.00072)*(1+0.00088)*(1+0.00102)*$ $(1+0.00093)*(1+0.00061)*(1+0.00049)*$ $(1+0.00041)*(1+0.00052)*(1+0.00752)*$ $(1+0.00051*35/31) \approx 1.01533$

- ▶ 2025년 11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로 2025년 10월분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적인 제요인 대등(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 상기 참조

▶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번호	거래 사례	비 교 항 목				격차율
		접근	자연	행정	기타	
1	가	1.00	1.00	1.00	1.05	1.050
- 본건은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으로 거래사례 대비 기타조건에서 다소 열세하나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하여서 장래의 동향 등 전체적인 기타조건에서 다소 우세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구 분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4,191	1.00	1.01533	1.00	1.05	25,789	26,000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적용단가의 결정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에 의하여 그 적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본건 감정평가에서는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 토지의 적용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조정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6,000	26,000	26,000

3) 토지가액의 결정

구 분	면적(㎡)	토지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1	4,990.0	26,000	129,740,000	--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결정의견

상기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가액,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본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기 호	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토지	1	4,990.0	26,000	129,740,000

					()				
1		335-5			4,990	4,990	26,000	129,740,000	
								129,740,000.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울리 소재 “문수산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지세 사다리형의 경사지임. 4. 이용상황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5. 접면도로상황 본건 동측 일부로 폭 약 2미터 ~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9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7. 제시목록외의 물건

없 음.

8. 공부와의 차이

없 음.

9.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본건 토지는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한 토지로서,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최근 소유자로부터 사업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어 그 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355-5





355-5





355-5





